

2003. 12. 13(토)

~~제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~~

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○.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 천 시 의 회

(산업건설위원회)

「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

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3. 12. 6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1. 28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3. 11. 28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41호)

다. 2003. 12. 6 :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지역경제과장 유재석)

가. 제안이유

- .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50% 대부지원제도 규정 신설.
- .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390호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,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 유지.

나. 주요골자

- . 국내·외 투자기업에 공장부지의 50% 매입 대부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1)
- . 조례 유효기간 삭제 : 조례 제390호(99.10.26) 부칙에 규정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삭제(안 부칙).

3. 법적 근거

가.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

나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제22호

다.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9항 제2호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.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88조제1항 제22호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9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50% 대부지원제도 규정을 신설하고, 동 조례 제390호 (1999. 10. 26)의 부칙 규정 중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
- .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김현철 의원	○안 제19조의1 제1항에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%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지매입자금의 재원은?	지역경제과장 유재석	○전체부지 중 50%는 투자기업이, 나머지 50% 중 도에서 25%, 시에서 25%를 부담함.
김현철 의원	○그러면 시비가 부담됨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우리시 거주 상시종업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토록 조례안에 수정가능한 지?	지역경제과장 유재석	○조례안에 조건을 명시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며, 시·군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.

6. 토론요지

- . 개정조례(안)에 제19조의1(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) 제1항 중 「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」 다음에 우리시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우리시 거주 종업원 고용비율을 명시하여 수정안으로 채택여부를 검토하였으나
- . 조건을 명시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, 도내 시·군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전원 원안가결 의견으로 토론 종결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: 없음